



2020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V1.1

**NIS**

## 제 · 개정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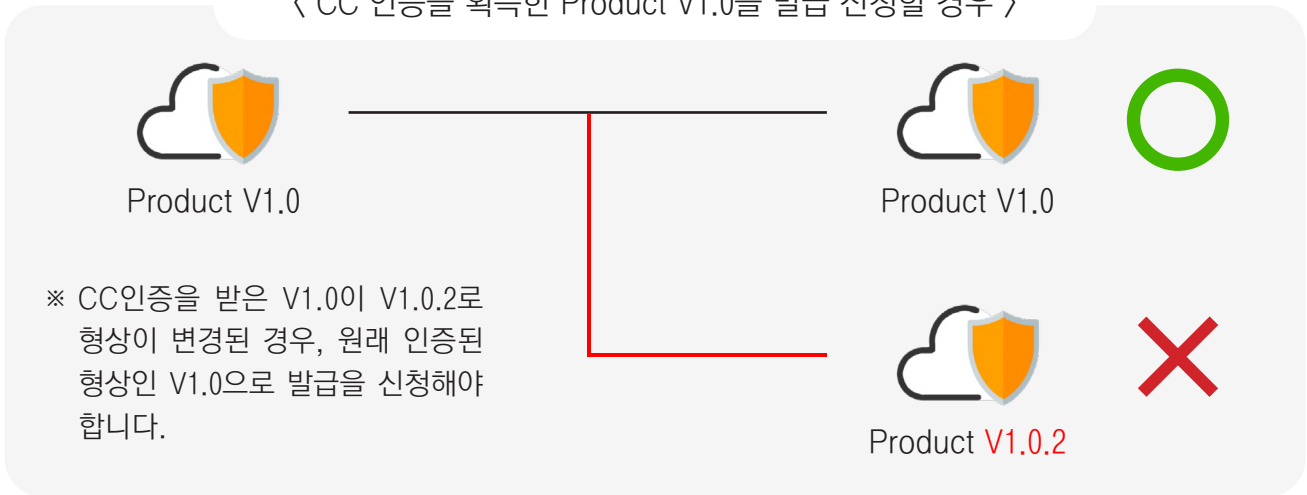
일 자	변경 내용	문서 버전
2020. 5. 15.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제정	V1.0
2020. 5. 21.	제출물 작성방법, 보안기능 시험, 발급절차 설명 등	V1.1

## 1.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대상 유형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유형인 ①정보보호시스템, ②네트워크 장비(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SDN 장비 등) 등을 대상으로 보안기능 확인서<sup>1)</sup> 발급<sup>2)</sup>이 가능합니다.

다만, 침입차단시스템 및 가상사설망 등 국가·공공기관 도입時 CC인증 또는 암호모듈 검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은 해당 인증(검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 CC 인증을 획득한 Product V1.0을 발급 신청할 경우 〉



## 2. 신청 업체의 준수 사항 및 제출물 작성 방법

신청 업체는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과 관련, ①대상 제품에 대한 제출물 작성·제출, ②대상 제품 시험에 필요한 기술 지원, ③발급 제품의 보안기능 및 취약점 개선결과 보증, ④발급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보안요구사항 및 시험 진행과 관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국가·공공기관 납품 이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제출물에 허위·과장·축소 없이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 업체는 제출물과 신청 제품에 대한 정당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 '보안기능 확인서'란 기술심의회가 발급 기준을 만족한다고 확인한 제품에 대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국내·외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 신청 업체 작성 제출물

신청 업체는 보안기능 시험 신청時 아래 9종의 제출물을 작성하여 대상 제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법률·정책에 의하여 제출이 불가할 경우, 시험기관에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열람 등의 대체 방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보안기능 시험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보안기능 설명서
-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 자체 시험결과 보고서
- CC인증서 사본(해당시)
-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
-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
- 취약점 개선 내역서
- 대상 제품

## ■ 제출물 작성 방법

모든 제출물은 한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품 명칭 등 고유명사는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공기관 도입時 CC인증 또는 암호모듈 검증이 필수인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검증)당시와 동일한 형상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시험 신청서에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문서 명칭	작성 요령
제품 설명서	제품의 H/W 사양, 운영 환경, 설치·사용법, 문제 해결 방법 등을 기술
보안기능 설명서	제품에 구현된 모든 보안기능과 비보안기능에 대한 식별 및 보안기능의 동작 방식 등을 기술
보안기능 운용 설명서	식별된 보안기능에 대한 설정과 운용 방법 및 수행 절차 등을 기술 (다만, 해당 내용을 '보안기능 설명서'에 기술하여 제출 가능)
시험결과서	신청업체가 대상 제품에 대해 보안요구사항에 따라 시험한 방법, 시험 환경, 시험 절차 등이 포함된 시험 결과를 상세히 기술
취약점 개선 내역서	(1) CVE·개발사·KISA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취약점으로 신청일 3년전(변경·연장의 경우 발급일)으로부터 전일(前日)까지 개선이 완료되거나 <u>개선중</u> <sup>1)</sup> 인 내역 (2) 보안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보완이 필요한 특정 취약점

(1)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표·발견되어 신청일까지 개선이 곤란한 경우, '개선중'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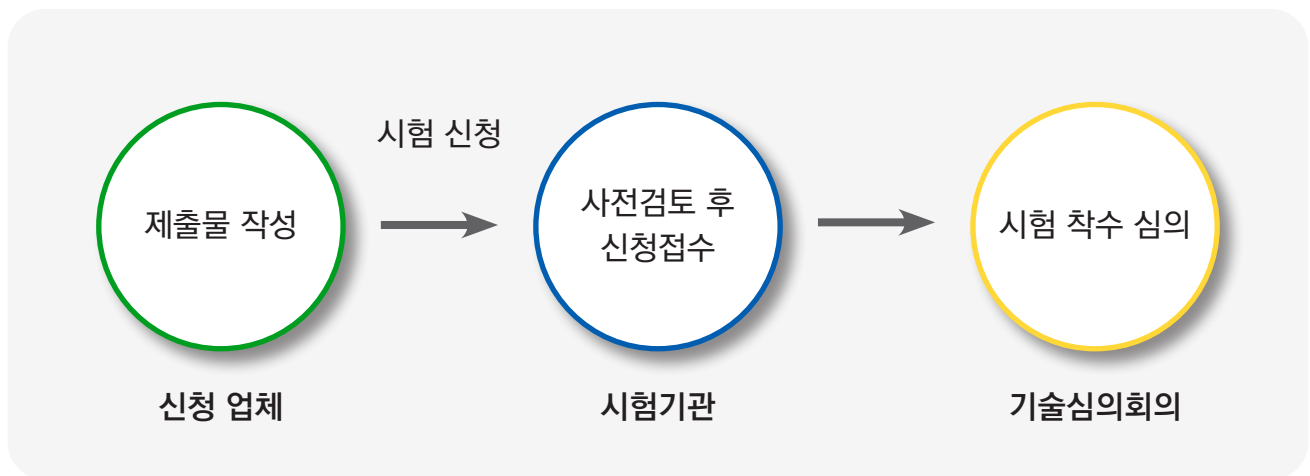
신청 업체가 제출한 문서 등은 시험 결과 검토 및 발급 심의를 위해 검증기관 및 기술심의회<sup>1)</sup>에 제출되어 열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업체는 제출물을 인수한 시험기관에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출물에 대한 제3자 유출 제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물을 인수한 시험기관은 제출물의 사본을 작성하여 효력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원본은 발급 절차가 종료된 후, 신청 업체와 합의한 기일 이내에 대상 제품과 함께 반환합니다. 그러나, '신청기관 준수사항 확인서'와 '취약점 개선 보증 서약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보안기능 시험 절차

#### ■ 시험 신청 및 착수 심의

신청 업체로부터 보안기능 시험 신청을 받은 시험기관은 업체가 작성한 제출물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검토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보안기능 시험 신청 접수증'을 작성, 신청 업체에 배부합니다. 시험기관은 기술심의회와의 착수 승인 이후, 신청 업체와 시험계약을 체결하고 사안 발생 순서대로 시험에 착수 합니다.



#### ■ 보안기능 시험 수행

시험기관은 신청 업체가 제출한 대상 제품에 대해 보안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보안기능 시험을 실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험기관은 신청 업체에 추가 자료제출 또는 시험 환경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업체는 시험기관의 요청시 합의된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물 등의 보안을 요청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보완 및 검토 기간을 제외한 시험 기간은 약 13주~15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기술심의회'란 보안기능 시험 착수 및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말합니다. 기술심의회는 매월 2회 개최됩니다.

## ■ 보안기능 시험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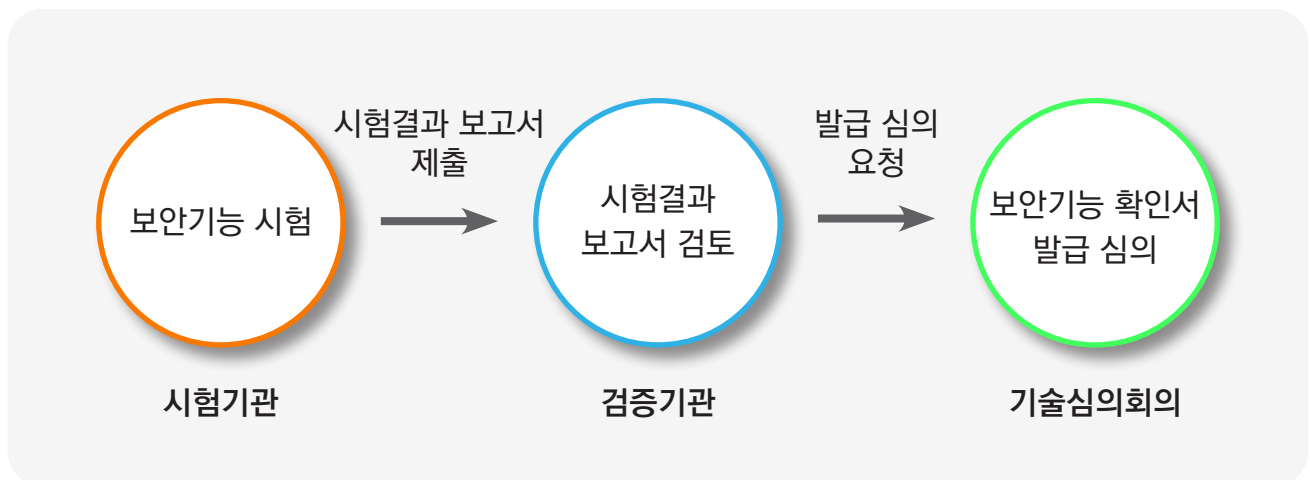
시험기관은 ①신청된 제품과 실제 제출된 제품이 다른 경우, ②신청 업체가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 ③신청 업체와 체결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신청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 대상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시험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시험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송·민원 제기 등을 거론하며 발급 절차를 위반하도록 강요할 경우, 기술심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시험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4.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절차

### ■ 시험결과 검토 및 발급 심의

시험기관이 검증기관에 제출한 '시험결과 보고서'의 검토가 완료되면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술심의회회의는 시험의 적절성 등을 심의한 후,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급 승인時 검증기관은 대상 제품에 발급 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시험기관에 통보하며 시험기관은 발급번호가 기재된 '보안기능 확인서'와 '시험결과 보고서'를 신청 업체에 발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발급이 제한됩니다.

### 〈 발급 제한 기준 〉

- 1 반국가단체·테러단체·대한민국 정부 전산망에 사이버 침해행위를 가할 목적으로 조직되었거나 침해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단체(또는 국가의 정부)로부터 기술·자금지원을 받거나, 공동·위탁 개발을 통해 개발된 경우
- 2 대상 제품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청 업체가 제출문서 허위 작성 등의 행위로 시험·검증·정책 기관을 기망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기술심의회는 신청 제품의 보안기능이 필수 항목을 만족하였다도 국가 전산망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취약점 등 보안위해 요인에 대한 추가 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업체가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발급되었다고 허위로 공표·홍보할 경우에는 발급을 즉시 불허할 수 있습니다.

## ■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 기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한 제품은 2년을 부여하며 그 외 제품은 1년을 부여합니다. 총 유효기간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효력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인증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모듈)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검증)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 인정 기준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은 발급 당시의 형상에 한정되며 ①발급 당시의 제품 명칭 또는 버전의 변경(소수점 이하의 변경도 포함), ②발급 당시 식별된 보안기능의 변경 또는 추가·제거, ③발급 제품의 보안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보안기능 또는 운영환경(운영체제 등)이 변경된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제품 사후 관리

### ■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 업체는 ①보안기능 확인서의 분실·훼손, ②보안기능 확인서 보유기관 명칭 변경, ③보안기능 확인서 권리의 양도·양수 등의 경우에는 시험기관에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이전(以前)에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부여합니다.

### ■ 변경·재승인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안기능 변경 등의 사유로 형상이 변경된 제품은 변경승인 또는 재승인 절차를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보안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영 환경(운영 체제)의 변경, ②보안기능의 미미한 변경(보안기능의 구동·종료 과정에서 절차가 추가·생략 되지 않고 보호 대상(범위)이 변하지 않은 경우) ③탑재되는 H/W 모델의 변경(추가·제외 등)時 변경승인을 통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①보안기능의 추가·제거, ②보안기능의 중대한 변경(보안기능의 구동·종료 과정에서 절차가 추가·생략되거나 보호 대상(범위)의 변경), ③보안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보안기능 또는 운영환경(운영체제 등)의 변경 등은 재승인을 받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업체는 변경승인 신청시 '효력연장·변경승인 신청서', '보안영향분석서', '취약점 개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승인은 최초 신청과 동일한 제출물과 절차로 진행됩니다.

## ■ 효력 연장

효력 연장이란,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업체가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만료 90일 이전부터 30일 이전(以前) 사이에 '효력연장·변경승인 신청서'와 '취약점 개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당시의 형상이 변경되지 않고 공개된 최신 공격기법에 취약하지 않으며,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 만족이 확인된 제품은 효력 연장이 가능합니다.

## ■ 권리의 양도(양수)·이전 및 종료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업체가 소유한 보안기능 확인서의 권리를 계약에 의해 양도 또는 이전(移轉)하였을 경우, 양수업체(인수업체)는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와 양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및 권리의 양도 또는 이전(移轉)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sup>1)</sup> 사본 1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기관에 제출합니다.

보유 업체의 해산, 폐업, 사업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일수 기준 5일 이내에 시험기관에 보유한 보안기능 확인서의 효력 종료를 신청해야 합니다.

## ■ 제품 명칭 변경 등

보안기능 확인서 보유 업체가 발급 제품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험기관에 제출합니다.

또한, 업체의 명칭 변경·인수 합병 등으로 인해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면 제품 명칭 변경時에는 '보안기능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1부를 제출하고 인수·합병時에는 이에 추가하여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sup>2)</sup> 사본 1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기관에 제출합니다.

다만, 발급 제품의 형상변경으로 인한 경우는 변경승인 또는 재승인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1),(2) 계약서에 양방 또는 일방의 영업기밀이 포함된 경우, 양수(인수)기관은 검증기관과 협의 후, 해당 사실이 기재된 부분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수)기관은 계약서 사본이 원본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 효력 정지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기술심의회회의 심의 후, 발급 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보유업체는 기술심의회회의 효력 정지 결정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시험기관을 통해 검증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효력 정지가 만료되면 검증기관은 효력 정지 만료일의 다음날에 해당 보안기능 확인서를 보유업체에 반환합니다.

다만, 반환일이 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근무일에 반환합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나 정지 기간의 총 합은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 〈 효력 정지 기준 〉

- 보유업체가 정책기관 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취약점 개선을 요청받고 합의된 시일(예: 15일) 이내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보유업체가 정책기관과 합의된 기간 내에 국가·공공기관에 납품된 제품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보유 업체가 보안기능 확인서를 국가·공공기관 납품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등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보유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 ■ 효력 취소

검증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기술심의회회의 심의 후, 발급 제품의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유업체는 기술심의회회의 효력 취소 결정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보안기능 확인서를 시험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 〈 효력 취소 기준 〉

- 보유업체가 제출물을 허위로 제출하여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보유업체가 발급 제품의 취약점(백도어 등)에 대한 정책·검증기관의 개선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 보유업체가 보안기능 확인서를 위·변조 등 임의 조작한 경우
- 보유업체가 발급 제품의 형상 또는 탑재되는 H/W 모델이 변경되었음에도 기존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를 임의로 행사하는 등 오·남용할 경우

끝.